

부천시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

의안번호	93
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6. 2. 5

제 출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제안이유

○ 동정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되기 이전에 동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여론 수렴 등 동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성된 것이나, 지방자치단체가 본격 시행되고 있는 현재에서 조례로써 이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

주요골자

- 동정자문위원회 폐지
- 시행일 : 공포한 날부터 시행

부천시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

부천시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